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2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정성호·김남희·김성환

김영진 • 김정호 • 문진석

박은정・박 정・안규백

안태준 • 윤후덕 • 임미애

정준호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음.

2024년 1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.7명대를 기록하여 역대 최 저수준인 상황임.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멸 위 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.

대한민국의 양육비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2 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양육비는 97.6만원으로 평 균 가구소득 대비 19.3% 수준으로 부모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.

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하기 위함(안 제12조제3호머목).

법률 제 호

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머목 중 "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(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)"를 "출산이나"로, "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"을 "지급받는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급여"로 하고, 같은 목에 1) 및 2)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)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
- 2) 6세 이하(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)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이내의 금액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	제12조(비과세소득)			
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				
세하지 아니한다.			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	
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	3			
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				
하는 소득				
가. ~ 러. (생 략)	가. ~ 러. (현행과 같음)			
머.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	머. <u>출산이나</u>			
출산이나 6세 이하(해당	<u>지급받는 다음의</u>			
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			
로 판단한다) 자녀의 보육	<u>여</u>			
과 관련하여 <u>사용자로부터</u>				
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				
이내의 금액				
<u> &lt;신 설&gt;</u>	1)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			
	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			
	용자로부터 받는 대통령			
	령으로 정하는 급여			
<u>&lt;신 설&gt;</u>	2) 6세 이하(해당 과세기간			
	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			
	한다) 자녀의 보육과 관			
	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			

 버. ~ 저. (생 략)

 4. · 5. (생 략)

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버. ~ 저. (현행과 같음) 4.·5. (현행과 같음)